

# 「2024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도약과 사업성공을 위해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7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및 특정 교육 기관 선발을 위한 담합, 공모의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타 교육 기관의 공정한 공모를 저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 ◇ 본 공모와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http://www.kofpi.or.kr)) → 고객지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 개요

### 공모목적

- 산림분야 청년창업자의 도약과 사업성공을 위한 성장 및 사업화지원

### 신청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4.5.17.) 산림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개인, 법인)로서, 39세 이하인 자

**< 자 격 조 건 >**

**가. 업력** :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자격 대상기업: '17. 5. 18. ~ '24. 5. 17. 기간 중 사업을 개시 한 자

**나. 산림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예시 : 단기임산물 생산·가공, 목재목공,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경영, 수목보호 등

**다.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39세 이하 인 자

\* 신청자격 출생기간 : 1984. 5. 18 ~ 2005. 5. 17.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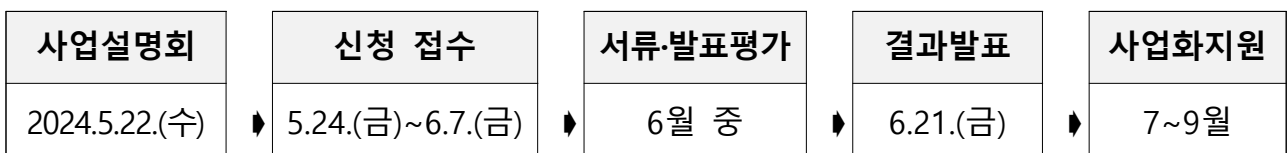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9. 30(월)까지

총 사업비 및 선정규모 : 200백만원, 10개소 x 20백만원 내외

기관별 임무 및 역할

<b>&lt;총괄기관&gt;</b> <b>한국임업진흥원</b> <b>(산림일자리발전소)</b>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 총괄 - 산림분야 청년창업자 선정 및 사업화 자금 사용계획 승인 - 사업화 자금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승인
↑↓	
<b>&lt;주관기관&gt;</b> <b>사회적협동조합세상만사</b>	- 마중물 지원사업 참여희망 청년창업자 공모 및 선정 지원 - 청년창업자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
↑↓	
<b>&lt;청년창업자&gt;</b> <b>창업 7년 이내 개인·법인</b>	- 사업화 자금 활용 계획 수립 및 활동 - 멘토링 참여 및 최종활동결과 보고

공모절차 및 일정



##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4. 7 ~ 9. 30 (3개월간)

□ 지원내용 :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구 분	세부내용																
성장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멘토링(희망분야)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 분야 예시 : 시장분석, IR, 규제, 클라우드펀딩, 인증, 특허 등</li> </ul> </li> </ul>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활용계획(예산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li> <li>** 사업화 자금은 협약기간 외 집행불가</li> <li>***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대응자금 없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사업화 자금 비목&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비 목</th> <th>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외 주 용역비</td> <td>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td> </tr> <tr> <td>광 고 선전비</td> <td>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r> <td>무형자산 취득비</td> <td>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비</td> </tr> <tr> <td>기 계 장치비</td> <td>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r> <td>지 급 수수료</td> <td>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등)</td> </tr> <tr> <td>교 육 훈련비</td> <td>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으로 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한함</td> </tr> </tbody> </table>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 주 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광 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비	기 계 장치비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 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등)	교 육 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으로 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한함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 주 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광 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비															
	기 계 장치비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 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등)															
	교 육 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으로 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한함															

### 3

## 선정 계획

### □ 선정 및 지원 절차

#### ○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 ○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기술성, 실현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등
- \* 발표자는 신청자(대표인) 본인으로 하며, 평가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자금(정부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창업의지	창업 동기 및 청년창업자 창업의지, 사전준비성, 목표 및 비전 등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제품, 서비스)의 시장성, 차별성, 우수성 등
사업계획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절성, 사업화 전략 등
성장가능성	시장진출 및 수익창출 가능성, 지원효과, 지속가능한 성장가능성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온라인)

- 일 시 : '24. 5. 22.(수) 14:00 ~ 15:00, Zoom
- 주 제 : 2024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창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 접속링크 : <https://zrr.kr/8301>

## 5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4. 5.24.(금) ~ 6.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이메일([coop10004@gmail.com](mailto:coop10004@gmail.com)) 제출

\* 제출자료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참여기관에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서·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안내 및 서식(첨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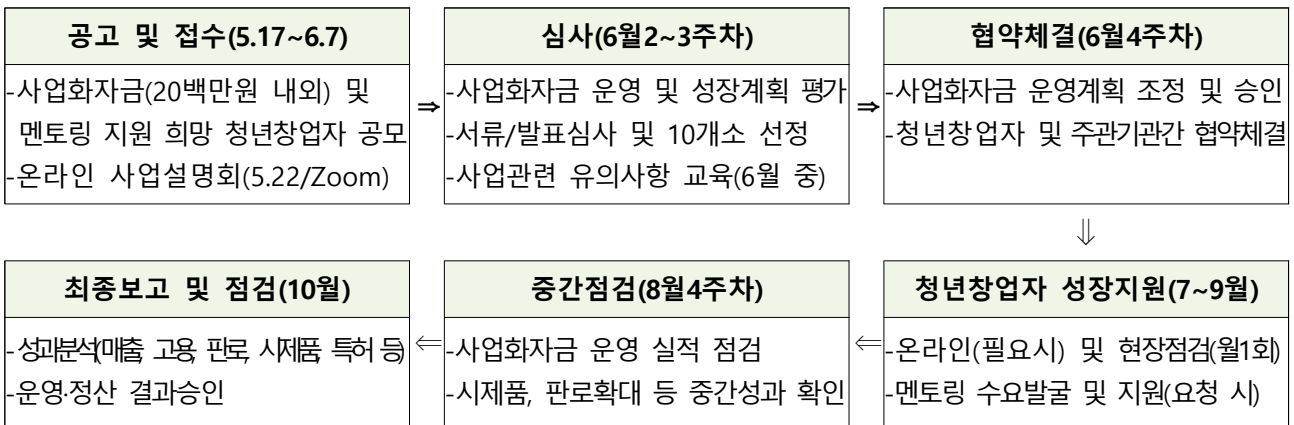
○ 기관별 전화번호

공모 관련(주관기관)	사업 관련(한국임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세상만사 - 담당 : 송승민 팀장 043-331-0211	산림일자리발전소 - 유 리 책임 042-381-5192 - 강유림 주임 042-381-5131

## 6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여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창업자의 의무 및 역할

- 선정된 창업자는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된 창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자료제출,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 교육·멘토링 및 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된 창업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해석권한이 있음
- 작성서류의 오타, 미기입, 기재사항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공모 참여기관에 있음
- 신청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산림청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동일 과제(아이템)로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과제로 사업 수행 시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의 별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동일 아이템(과제)으로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환수 처리됨. 또한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연락처 미기재, 오타, 연락불가 등 연락불능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주요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창업자가 공고문, 매뉴얼, 한국임업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 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임업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임업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에 따라 주관기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조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